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9. 1            개정 2017.12.22  
개정 2010. 1. 1            개정 2026. 3. 1  
개정 2015.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교육·상담을 포함한 가해자 관리·지도에 대한 사항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평등하고 안전한 대학 학문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 학문공동체는 성평등을 지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피해자의 신상 등 정보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그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특정된 자의 성희롱·성폭력 가해 혐의에 관하여 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고자”라 함은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라 함은 상담실의 조사 등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피신고자 또는 가해자를 가리키되, 피해자 아닌 사람이 상담실에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신고자는 제외한다.
8. “관리자”라 함은 학과, 연구소 등의 기관 그 밖의 학내 부서 등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뜻하되,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 신분에 있는 교원은 해당 지도학생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9. “관계인”이라 함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해당 사건 당사자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상담실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라 함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상담실의 사건 조사 및 처리 등 업무와 관련을 갖는 부서를 말한다.
11. “2차 피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피해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제3자 또는 피신고자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피신고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행위
  - 나. 관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행위
  - 다.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자 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공연히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 라.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신고하려는 자를 회유하는 등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 마.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하는 행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자 모두를 대학 구성원으로 본다.

1.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및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구생을 포함한다)
2.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3. 직원(임시 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4. 연구원
5.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에 따라 대학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 중 일방만 제1항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5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평등한 대학 학문공동체의 구현을 위하여 성희롱·성폭

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수를 독려하며, 상담실 운영의 지원 및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① 대학 상담센터 내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처리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전문상담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대학 구성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된 비전임 교원은 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방교육 이수증을 상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는 피해자 또는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담실에 대하여 한다.

③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 또는 교·직원 등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한하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⑥ 신고자는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또는 대책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고를 철회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9조(신고의 각하) ① 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자가 제8조제2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한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나, 혐의사실의 중대성 및 명백성과 피신고자의 누우치는 정

도에 비추어 교육목적상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상담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징계 등의 필요성을 적어도 1회 설명한 후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나, 피해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담센터장은 신고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직권조사) 상담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건 조사 및 처리의 필요성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적 피해자 보호조치) ① 상담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자,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자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및 연락·접촉 금지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신고자,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상담센터장이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인 때에도 동일 교과목 타 강좌로 해당 피신고자를 수강 변경·이동하는 등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위한 학사 조치를 총장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총장 및 관계부서의 장 등은 요청된 조치가 피신고자에게 사실상의 정확처분 또는 유급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센터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사 조치를 취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 및 관계부서의 장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피신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내려진 피해자 보호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배한 경우에 해당 피신고자의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양정 가중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 아닌 신고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건처리절차) ① 상담센터장은 당사자 및 관계인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담실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조사 결과(대책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다) 또는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대책위원회 회부를 희망하는 경우 상담센터장은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상담센터장의 명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상담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대리인 등을 동반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와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③ 피신고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조사 및 처리의 기간)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사 및 처리의 기간은 9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②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절차진행이 중단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상담실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서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고 및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 이외에는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배하여 신원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해당자의 신분예 따른 징계위원회는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17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 위원을 적어도 30% 이상 포함하여 성비(性比)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상담센터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행정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2. 팀장 이상의 본교 전임 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와 관련된 분야 또는 법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대책위원회 회의)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담실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2. 중재 등 사건의 적절한 해결 방안의 제시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또는 발의
  4.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 또는 발의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③ 피해자 및 피신고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에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9조(징계 요청) 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신분제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 요청하지 아니하고 원(原) 사건에 관한 징계 요청에서 그 양정을 가중하여 할 수 있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피신고자에게 벌령 및 학칙 그 밖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자가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하여 위배한 경우
3. 피신고자가 사건의 신고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관련자의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제3조 제11호에서 정하는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2. 누구든지 상담실의 사건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3. 누구든지 사건의 신고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상담실 구성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였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한 경우
4. 누구든지 타인을 해할 목적에서 상담실 또는 대책위원회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③ 피신고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성희롱·성폭력 가해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를 요청할 때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④ 피신고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거나 동일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 등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피신고자의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출입 제한·금지 및 가해자 명부의 작성·보존)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학 내 특정 공간에 대한 가해자의 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그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책위원회는 위 결정이 가해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속적 관리·지도를 위하여 가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자 명부는 대책위원회 위원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가해자의 졸업 후 10년이 경과하면 가해자 명부 기재 내용을 삭제한다.

제21조(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서약회의 개최) 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종결되면(파면·해임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제외한다) 14일 이내에 해당 가해자가 참석하는 재발방지서약회의(이하 “서약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으나,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서약회의 개최 일정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대책위원회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상담센터장이 서약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서약회의는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없는 때에 한하여 개최한다.

⑤ 가해자는 재발방지서약서를 서약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가해자 관리·지도) ① 대책위원회는 학외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재발방지교

육의 이수를 60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때 그 비용은 가해자의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해자는 이수 완료 후 지체 없이 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80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가해자에게 봉사활동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가해자는 수행 완료 후 지체 없이 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가해자의 선정을 배제한다. 대책위원회는 심의·의결 시에 선정 배제의 종기(終期)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2. 교내·외 수상 후보자
3. 학생의 대외 활동 또는 공적 활동
4. 국내·외 교류학생

④ 가해자 소속 학과장은 가해자의 졸업 시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상담을 적어도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3.1.)

제23조(대책위원회 결정의 특례 등)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서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 경우에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책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받아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피신고자를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때에 한하여 대책위원회는 제18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상담실 및 대책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실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내규 및 운영세칙) ① 상담센터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자의 인식 및 태도 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장은 상담실의 운영 및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